

대통령령 제 호
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제2조제4호에서”를 “제2조제3호에서”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제4조제3항제6호에서”를 “제4조제3항제8호에서”로 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제24조제1항제2호에서”를 “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3호 중 “제24조제8항에”를 “제24조제6항·제8항에”로 한다.

제7조제6호 중 “승인 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무”를 “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및 이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·
제3항에 따라 그 은행의 주식을
보유하는 자를 말한다)를 말한
다.

제6조(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
기준등) ① (생략)

②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"대
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를 말한다.

제6조의2(권한의 위탁) (생략)

1.~2의2. (생략)

3.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초과
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
사 중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
사

제7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
(생략)

1.~5. (생략)

6.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
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무

-.

제6조(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
기준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
호에서 _____
_____.

제6조의2(권한의 위탁) (현행과
같음)

1.~2의2. (현행과 같음)

3. - 제24조제6항·제8항에 ---

-

제7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
(현행과 같음)

1.~5. (현행과 같음)

6 _____ 초과
소유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및
이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
무